

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(제26조의2제1항 관련)

1. 시설 기준

가. 기관의 위치

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,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,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

나. 시설의 구조 및 설비

- 1) 채광·환기·조명·온도·보건·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
- 2)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
- 3)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.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
- 4)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

다. 소방시설 등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·관리되고 있을 것

2. 인력 기준

가.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- 1)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
- 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3) 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
- 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5)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

나.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, 2급)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4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 5)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
- 6)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- 7)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8) 1)부터 7)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9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

다.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)부터 9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라.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)부터 7)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